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 확대 등〉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9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 확대	3
2. 특수임무사망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근거 마련	15
※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6. 4. 16.
3. 회부일 : 2026.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 확대

-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대상에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1~7급)¹⁾된 사람 외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1~14급)²⁾을 받고,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제3조(적용 대상자) -----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1~14급으로 구분))

현행	개정안
다. 1. (생략)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u>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u> <u><신설></u> <u><신설></u>	--. 1. (현행과 같음) 2.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u> <u>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4등급까지의 장해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u>

현행	개정안
3. (생략)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³⁾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람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됨⁴⁾.

○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7급)으로 판정된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사람이며, 2026년 5월 말 기준 등록된 특수임무부상자는 1,333명
임(본인 1,134명, 유족 199명).

-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거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며, 2026년 5월 말 기준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는 2,628명임(본인 1,671명, 유족 957명).

<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현황 >

(단위: 명, '26.5월 말 기준)

구 분	사망·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합 계
본 인	-	1,134	1,671	2,805
유 족	26	199	957	1,182
합 계	26	1,333	2,628	3,987

자료: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가산 공로금, 장해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⁵⁾하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중 장해등

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로금) ①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34명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현황 >

(’26.5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특수임무수행자				교육훈련자				합 계
	전사자	장애자	임무수행자	소 계	사망자	장애자	교육훈련자	소 계	
인 원	1,164	325	1,059	2,548	55	2,809	1,365	4,229	6,777

* 장애자: 장애등급 판정자(1~14급)

자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수임무 공로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상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

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72배에 별표 2에 따른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특별공로금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14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애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사망·행방불명시기와 사망·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장애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고,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수송시설 이용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 감면진료만 제공될 뿐, 보상금이나 수송시설 이용지원 등은 제공되지 않음.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비교 >

지원 구분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보 상 금	·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교육지원	· 본인과 자녀 대학교까지 지원 * 상이 7급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하여 지원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과 자녀 대학교까지 지원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취업 지원 * 상이 7급은 자녀 제외	· 본인, 배우자 취업지원
의료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진료 (100% 지원) · 7급 상이자 비상이처 진료시 10% 본인부담	· 보훈병원 감면진료(60% 지원) * 상이처는 무료진료
수송시설 이용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 이에,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여 특

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장애를 입은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 여부, 보훈보상 원칙, 일반 상이자와의 형평성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보훈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외에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보훈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⁶⁾, 장애등급 판정 자료 확대하더라도 보훈심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를 통과한 후의 절차이므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예우하고 있는 바⁷⁾,

6) **개정안의 제안이유:**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심사 없이 등록·결정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달리 ① 보훈심사(등록요건 결정)⁸⁾와 ② 상이등급 판정⁹⁾의 두 단계를 거쳐 등록·결정됨.

보훈심사 단계는 공무 수행과 상이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¹⁰⁾¹¹⁾. 상이등급 판정은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③ ~ ⑥ (생략)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생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략)

④ (생략)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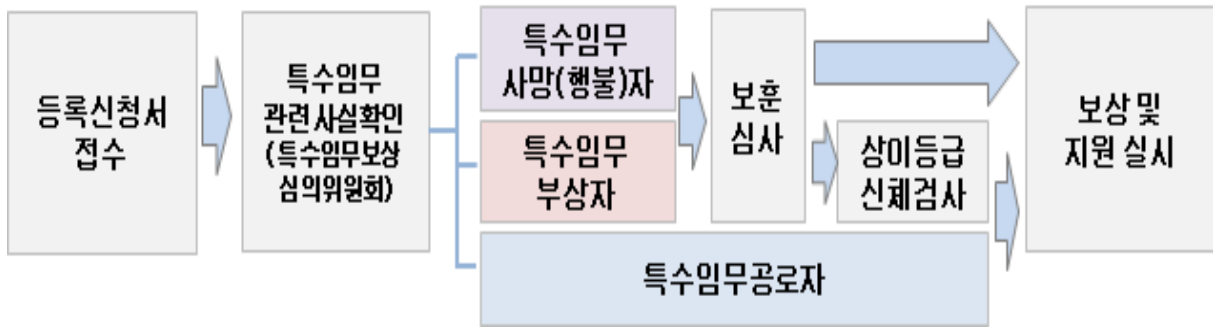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기 쉽지 않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¹²⁾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11)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280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12) 고현중·강준혁, 「국가에 의해 은폐된 삶: 특수임무수행자의 사회 복귀와 제도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 2025. 12., pp. 116-140; (사)한국보훈학회 주최 국가보훈정책 세미나(2016.7.20.);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보훈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상이한 장해등급과 상이등급의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자를 신체검사 및 보훈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일괄적으로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¹³⁾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¹⁴⁾와 현행법 제5조의 예우원칙¹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은 공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한 「국가배상법」의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율 5% 이상에 해당하는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 희생에 대한 예우 수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 7급은 장해 11~12급과 유사한 수준임.

13) 개정안 제6조의2

14)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상이등급 및 장해등급 비교 ＞

구 분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특수임무수행자 장해등급							
근거 및 취지	국가를 위한 공훈·희생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 수준(보상금, 복지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					공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							
등급체계	상이등급	상이 1~7급(11개)				장해등급		1~14급					
평가방식	"상이 부위·양태 +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공훈보상) *노동상실률과 신체장애율 등 종합고려					각 등급별로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일시금·위로금)을 산정(손해배상)							
노동상실률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장해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상이등급	1~3급	4~5급			6급~7급					등외			

* [반신불수가 된 자] 국가배상법상 1급/ 국가유공자법은 1~3급(추가 임상증상 고려)

** [씹는 기능 전폐된 자] 국가배상법 3급/ 국가유공자법은 3~6급(개구량 반영)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자] 국가배상법 7급/ 국가유공자법은 5~7급(면적과 길이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 셋째,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특수임무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¹⁶⁾하는 경우,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상이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넷째,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진료비 국비 지원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는

16) 개정안 제6조의2

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¹⁷⁾.

- 국가보훈부는 별도 신체검사 등의 절차 없이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도록 하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다만,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추가 인원 및 소요예산 추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 이유는 특수임무부상자 인원(1,333명)과 특수임무수행자 중 장해등급 판정자(3,134명) 간 1,801명의 인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이등급 미달자 외에도 두 법간 유족 범위 차이(특수임무유공자법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유족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특임자보상법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임.)로 인한 것이므로 추가 인원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2. 특수임무사망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고, 특수임무부상자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보상) 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1호의 특수임무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¹⁸⁾되고,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등록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의 예우를 하고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령의 특수임무유공자 등록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보상의 근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 보훈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보훈 체계는 ‘전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¹⁹⁾와 보훈보상대상자²⁰⁾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등 예우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국가유공자로 인정·보상하는 것은 보훈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둘째, 특수임무사망자 및 부상자를 일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차등적인 보상·예우를 받고 있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장해등급 판정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상이등급에 미달하는 사람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보훈 심사 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와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보상 대상자에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시행령에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에서 직접 규정²¹⁾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훈 체계상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정²²⁾하여 국가유공자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납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특수임무부상자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를 일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보상하는 것은 보훈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참고1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거법령	대 상 요 건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등록현황

(‘26. 5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사망·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합 계
본 인	-	1,134	1,671	2,805
유 족	26	199	957	1,182
합 계	26	1,333	2,628	3,987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2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수혜 사항

구분	내 용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불가, 2022.2.18.부터 시행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자, 공로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자·공로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부모, 비상이자 및 상이 7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 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 국비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단, 전·공상군경 복합등록자의 경우 20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에 대해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보철구 지급 - 응급진료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 14일경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한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 지원('18.7.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선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 : 6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대부 지원	○ 대상: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기타 대상자와 배우자,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부상자 본인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상·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탠포드)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증명명 발급수수료 면제 ○ 영구용태극기·대통령령의 근조기 증정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자료: 국가보훈부